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가단137789 판결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다담

담당변호사 김영상,김인영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29,287,128원 및 그중 15,95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3,337,128원에 대하여는 2021.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30,107,700원에 대하여 2021.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1. 2. 4. 접수 제464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가 운영하던 인천 계양구 D 소재 ‘E점’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이하 ‘이 사건 판매점’이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 7. 3.경 이 사건 판매점에서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4.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합계 30,107,7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1. 2. 17.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5929호 등으로 업무상횡령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에서 피고 B이 원고에게 30,107,7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밖에도, 피고 B은 이 사건 판매점에서 근무하던 중 다수의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요금은 모두 내가 납부하고 3개월 후에 해지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고객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① 피고 B이 원고 명의로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필요한 요금 수납 명목으로 원고 명의로의 신용카드를 8,718,954원을 결재하여 사용하였고, ② 고객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해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휴대전화 개통이 해지되어, 휴대전화 대리점들이 원고에게 휴대전화 개통시 지급했던 리베이트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원고가 F 대리점인 (주)G에게 2020. 4. 2. 100,000원, 2020. 6. 15. 1,078,160원, 2020. 7.경 158,600원, 2020. 9. 2. 618,984원, 2021. 1. 12. 582,000원을, H 대리점인 I에게 2020. 6. 30. 360,000원, 2020. 9. 15. 651,310원을, J 대리점인 K에게 2020. 10. 22. 1,069,120원을 각 환수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합계 4,618,174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9. 8. 31. 피고 B에게 15,950,000원을 변제기 2019. 9. 6.,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라. 그 후 피고 B은 2021. 2. 4.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인천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① 업무상횡령, ②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부당사용, ③ 고객 명의를 빌려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해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휴대전화 개통이 해지됨에 따라, 원고가 휴대전화 대리점들에게 휴대전화 개통시 지급받았던 리베이트를 반환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43,444,828원(=30,107,700원 + 8,718,954원 + 4,618,174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다만 그 중 횡령금액 30,107,700원에 대해서는 이미 배상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나머지 금액인 13,337,128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① 손해배상금 13,337,128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횡령금액 30,107,700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 은 원고에게 차용금 15,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금전차용일인 2019.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이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C에게 매도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C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다.

-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까지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다.
- ② 피고 C은 공인중개사 L의 소개로 매도인 B을 대리한 M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93,000,000원 채무를 피고 C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193,000,000원에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③ 이 사건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부당한 염가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④ 피고 C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드러난 부분 외에 피고 B의 채무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아무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았다.
- ⑤ 피고 B과 특별한 인적 관계도 없는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법적 분쟁 등의 위험을 감수하고 굳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이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웅철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

아파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15층 공동주택, 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47.53m²

2층 405.513m²

3층 405.513m²

4층 405.513m²

5층 405.513m²

6층 482.987m²

7층 482.987m²

8층 482.987m²

9층 482.987m²

10층 482.987m²

11층 482.987m²

12층 482.987m²

13층 482.987m²

14층 482.987m²

15층 482.987m²

지1층 712.040m²

지2층 91.033m²

옥탑1층 43.46m²

옥탑2층 43.46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7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73.921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302.9m²

2.

주차장 303.8m²

3.

주차장 322.5m²

대지권의종류 : 1, 2, 3.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2, 3. 929.2분의 12.781

